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57호 2020. 10. 15.(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은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0-84호)

공 고

- 공인 등록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0-1216호)
- 「예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1242호)
- 「예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124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은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은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면 중심지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의 내용

- 위 치 :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일원
- 주요 사업내용
 - 기초 생활 기 반 : 다솜문화복지센터, 건강관리실리모델링, 중심가로디자인
 - 지 역 경 관 개 선 : 은풍다솜길
 - 지 역 역 량 강 화 :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등

4. 사업효과

- 농어촌 중심지 기능의 강화를 배후 농촌지역과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5. 사업비 : 4,000백만원 (국비 2,800 군비 1,200)

6.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7.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일괄(위)수탁)

8.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054-650-65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고 제 2020 - 1216호

공인 등록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등록 공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 사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영
2. 등록 사용개시일 : 2020년 11월 1일
3. 등록 공인명 : 예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외 1개
4. 등록 공인내역 : 붙임과 같음

2020년 10월 15일

예 천 군 수

등록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신조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신조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예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현재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 그러나 지난 3월 31일부터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조)

- 군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함

나.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

○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현안문제 의견수렴

○ 각종 봉사활동, 군정홍보, 기타 군정 협조사업 등

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 등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등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바. 보조금 사용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6조)

사. 다른 조례의 준용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7조)

○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준용규정 마련

3. 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 제6조 및 제1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10,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10월 중 추진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불임

사. 성별영향평가 : 관련부서 의뢰

5.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 행정지원실
- 전화 : 054-650-6838 팩스 054-650-6089
- 전자우편 : whitek7657@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예천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
2.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
4.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5. 기타 군정 협조사업 및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예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실적보고) ① 군수는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군청·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지방행정동우회 활동(봉사활동, 군정홍보 등)에 드는 준비물 및 소모품 등에 필요한 예산이 10,000천원으로 예상됨

4. 작성자

행정지원실 지방행정서기 강병진 (054-650-6838)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 정 지 원 실	
연 락 처	지방행정서기 강병진 054-650-6838

「예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함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예천군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함

나. 보조금 지원사업 규정 (안 제3조)

-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

다. 보조금 지원 신청·정산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신청 및 정산 방법에 대하여 규정

라. 보조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올바른 보조금 사용을 위하여 지자체의 감독권한을 규정

마.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안 제6조)

-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준용규정 마련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 제5조 및 제15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3,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10월 중 추진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사. 성별영향평가 : 관련부서 의뢰.

5.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 행정지원실
- 전화 : 054-650-6838 팩스 054-650-6089
- 전자우편 : whitek7657@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받은 자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①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타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도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예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재향경우회 활동(지역 치안 협력, 각종 공익활동 등)에 소요되는 각종 준비품 및 소모품 등에 필요한 예산이 3,000천원으로 예상됨

4. 작성자

행정지원실 지방행정서기 강병진 (054-650-6838)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 정 지 원 실	
연 락 처	지방행정서기 강병진 054-650-6838